

電氣事故의 原因과 對策

(法院判決文을 中心으로)

(2)

金 瑾 泰

大韓電氣協會 研究委員

第 3 章 本 論

1. 大旺코너 火災事件

가. 事件概要

1974年 11月 3日 02:47 頃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典農洞所在 大旺코너 6層에서 火災가 發生하여 6層에 있는 타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던 손님과 브라운觀光호텔 投宿者 및 從業員等 88名이 死亡하고 23名이 重傷을 입은 事件인데 이 事件에 對하여 警察에서는 電氣의 合線으로 因한 火災라고 結論을 내려 事件을 서울地方檢察廳城北支廳에 送致하였고 서울地方法院 城北支院에서 1975年 3月 7日 當時 大旺코너 變電室長이며 電氣保安擔當者에 對한 業務上失火點에 對하여는 無罪를 宣告하였고 變電室電工에 對한 業務上過失致死部分에 對하여는 禁錮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였는데 이에 對하여 檢察은 同日附로 서울地方法院抗訴部에 採證法違反, 法律誤解,

刑量不當等을 理由로 抗訴하였고 抗訴部는 1979年 3月 30日에 無罪를 宣告하였다. 檢察은 이에 不服 大法院에 上告하였으나 無罪로 判決이 確定된 事件이다.

나. 被告人 人的事項 및 犯罪事實

(1) 大旺코너內 타임나이트클럽代表P: 業務上過失致死傷 및 食品衛生法違反

(2) 타임나이트클럽 專務 S: (1)과 同一

(3) 타임나이트클럽 支配人 S.(클럽 現場責任者, 클럽 自衛消防隊長): 防火區域不設置, 防火門 피난계단 스프링클러등 不設置, 回轉門(클럽 出入門)의 補助門 不設置, 非常유도문 不設置, 消防訓練未實施, 홀後便 非常口閉鎖, 營業時間 任意延長, 인접 브라운觀光호텔 火災時 클럽 홀 손님에게 알리지 않고 避身.

(4) 大旺코너 變電室電工 R: 火災時 待避等 斷電(業務上過失致死傷)

(5) 大旺코너 代表理事 K.(建物所有者): 業務上 失火, 消防法 및 建築法違反, 電氣事業

法違反

(6) 브라운觀光호텔 代表 K: 業務上過失致死傷, 建築法 및 食品衛生法 違反

(7) 타임나이트클럽代表 P: 上同

(8) 大旺코너 管理課長代理 C: 業務怠慢

(9) 大旺코너 管理部長 R: 業務上失火

(10) 大旺코너 變電室長兼 保安擔當者 J:

이는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의 工事 維持 및 運用에 關한 保安의 監督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 電氣工事 및 配線關係가 電氣設備技術 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點檢하고 이들이 基準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是正하여 電氣施設로 因한 火災를 未然에 防止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火源層인 6層에 대하여 全然 施設點檢을 하지 아니하여 브라운觀光호텔 中央非常階段앞 복도 天井에 매립시설된 照明燈의 0.75m/m²연선 연결部分이 不完全하여 비닐전선간에서 단락이 형성되었고 同回路를 잇는 分電盤에 설치된 과전류 차단기가 60A이므로 단락시 용단되지 않고 계속 전류가 흘러 과열되어 비닐코드선이 타 들어가면서 銅線을 에워싼 가연성 비닐로 된 전선피복에 연소되고 同火源이 가연물질에 착화 天井을 태우면서 引火되어 觀光호텔 617호, 618호 客室 및 家具 집기 등을 전소시키고 밀폐되지 아니한 天井을 따라 동 6층에 있는 타임나이트클럽에까지 연소되어 同 6層 1,020坪을 전소시켰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大旺코너 火災事件은 電氣保安擔當者인 J의 業務上失火가 가장 重點의인 것이었던만큼 J의 犯罪事實을 中心으로 檢察과 法院이 첨예하게 對立되었던 事件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檢察과 法院의 相互攻防內容을 對比하여 보는 것이 가장 重要할 것 같다.

다. 大旺코너 變電室長兼 電氣保安擔當者 J에 對한 1審의 檢察 法院意見 對比

(1) 檢察의 主張

(가) 이事件建物 6層北쪽 交換室分電盤內的

左10개, 右12개의 通형 퓨즈 가운데 分電盤에서 호텔복도 食堂앞 中央非常階段앞 619호실 앞, 617호실 앞 복도天井內에 매립시설(형광등 20W짜리 2개씩 5개소)된 복도 照明燈回路(以下 甲 回路라 한다)에 접속된 2번재 퓨즈와 分電盤, 621호실, 623호실, 625호실, 627호실, 629호실, 631호실을 연결하는 客室 回路(以下 乙回路라 한다)에 접속된 左相 1번재 퓨즈만이 發火 以後 變電室에서 6층 電源을 차단할때까지인 發火初期에 電氣的作用인 短絡에 의하여 용단되었다는 點.

(나) 윗부분이 화염에 의하여 가장 많이 탔다는 點.

(다) 天井內에 施設되었던 鐵製換氣筒이 윗부분만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는 點.

(라) 6層호텔 626호실앞에 있는 스팀라디에터에는 나무로 만든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그 덮개의 탄모양을 보면 中央非常階段쪽이 反對쪽보다 더 많이 타 있다는 點.

(마) 6層食堂, 주방 등 다른 곳과 달리 非電氣的原因에 의한 發火原因을 찾을 수 없었다는 點.

(2) 法院의 意見

(가) 點에 對하여

甲·乙 2개 回路에 접속된 2개 퓨즈만이 發火以後 6層電源차단以前에 電氣的作用인 단락전류에 의하여 용단된 事實은 認定되나 2개回路의 단락지점이 各各 어느 지점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단락이 순수한 電氣的作用에 의하여 일어났는지 아니면 위 2개電氣回路 부근에서 非電氣的原因에 의하여 發火되고 그 화염이 電線에 연소되어 그후에 電線間에 단락이 일어났는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2개 回路中 어느 回路에서 먼저 단락이 있었는지 퓨즈 2개의 용단사실만 보아서 알 수 없다(6층 電源차단시에는 이미 불은 632호실에서 타임나이트클럽, 601호실쪽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나) 點에 對하여

6층 中央非常階段앞 복도天井이 가장 많이

랐다는 점은 記錄上 分明하나 法院의 1·2次 檢證結果에 依하면 中央非常階段앞 복도는 6층 全體복도 가운데서 가장 넓은 空間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中央非常階段에 연결되어 5층과 7층으로 通하는 지점으로 넓은 空間에 바람이 제일 잘 통하는 곳이므로 客觀적으로 보아 火災가 發生하면 제일 많이 탈 수 있는 곳이고 가령 불길의 위부분 632호실쪽 복도나 611호실쪽 복도에서 타오더라도 제일 많이 탈 수 있는 지점이므로 이 事實만 가지고 發火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發火部라고 하여 다른 곳에 比하여 더 많이 탄다고 하는 必然的意見은 없다.

(다) 點에 對하여

鐵製換氣筒이 上部分에 늘어져 있는 것은 上部分이 다른 곳에 比하여 많이 탔기 때문이다.

(라) 點에 對하여

스팀라디에터 木製덮개의 탄모양으로 보아 불길이 618호실쪽 복도에서 왔으리라는 것을 일부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탄모양이 반드시 위와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 點에 對하여

달리 非電氣的인 原因에 依한 發火原因을 찾아볼 수 없다는 點에 對하여 證人 P의 證言과 一件記錄을 綜合하면 호텔 618호실에서 634호실에 이르는 복도 및 大路邊의 客室은 發火後 거의 同時에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認定되는 바 檢證調書 및 鑑定書 記載에 依하면 호텔食堂 및 주방에 火因이 될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뿐인데 복도의 左右에는 617호실 내지 632호실에 이르는 16개의 客室이 있고 火災當日 各 客室에는 많은 투숙객이 投宿했던 점은 記錄上 分明하며 非電氣的原因에 依한 火因을 찾을 수 없었던 點이 수사의 미진으로 인한 것일수도 있고 或은 수사기술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投宿客의 不注意로 因한 失火라든가 其他 非電氣的原

因에 依한 發火의 가능성을 선불리 배제할 수는 없다(各客室 하나하나에 대한 發火要因을 分析檢討한 흔적은 별로 없고 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632호실의 경우에는 의문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6층 호텔 비상계단앞 복도天井을 發火部로 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다.

위 지점에서 먼저 불길과 연기가 보였다고 하는 목격자로는 金○○이 있을 뿐인데 증인 姜○○, 同 林○○, 同 李○○, 同 崔○○, 同 鄭○○ 등의 證言 및 이들의 경찰 檢査에서의 陳述을 綜合하면 호텔 632호실에 投宿했던 姜○○이 방안에서 잠이 깨어 목욕탕 벽쪽에 타오르는 불길을 발견하고 몸에 팬티만 걸친 채 出入門을 나와 호텔 南쪽 階段옆 엘리베이터 앞에서 호텔종업원 林○○을 만나 632호실쪽에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호텔 종업원들이 불이난 것을 처음 알았고 그때 林○○은 交換室에 電話를 걸어 교환원 鄭○○에게 火災申告를 하라고 연락하여(당황하여 112申告를 하라고 하였다) 鄭○○은 비로소 火災가 난 것을 알았고 姜○○이 南쪽 엘리베이터앞에 뛰어나왔을 때 李○○은 650호실에 모포를 갖다주고 606호실앞을 거쳐 호텔 프론트를 向하여 가고 있었으며 그후 632호실 쪽에서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 609호실앞을 거쳐 615호실까지 가서 門을 두들겨 投宿客에게 불이났다는 事實을 알린 事實 및 615호실 投宿客 李○○의 경찰에서의 陳述에 依하면 門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난 줄을 알았고 法院의 2次 現場檢證結果에 依하면 發火地點이라고 하는 데에서 632호실까지의 거리는 33.5m이고 同地點에서 交換室까지는 11m인데 萬若 檢察主張地點이 發火地點이라고 하여 632호실쪽과 657호실쪽 복도로 연소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연소速度는 거의 同一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發火點에서 不過 11m떨어진 곳에서 夜間근무를 하던 交換員이 火災를 먼저 發見하지 못하고(交換室出入門 上部分에는 유리창이 있어 복도를 볼 수 있다) 632호실에서 뛰어나온 姜○○의 이야기를 듣고 호텔프론트에서 林○○이 電話를 걸 때까지 불이난 事

實을 모르고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있고 -中略-

628호실에서 어떤 女子가 사람 살려하며 뛰어나오기에 방안을 들여다보니 연기가 자욱하고 그방 목욕탕에서 어떤 男子가 바지에 붙은 불을 끄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618호실앞 복도에서 發火되었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金○○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일단 6층非常階段앞 복도 부근에서 發火한 것으로 가정하고 살펴보면 變電室長 J의 陳述에 依하면 6層의 電氣施設은 地下室 變電室로부터 2개 回路가 入相되어 南쪽 階段部 엘리베이터옆 601호실벽과 北쪽 交換室벽에 各 分電盤이 設置되어 電源이 供給되어 있고 北쪽 交換室 分電盤에서는 同室을 포함한 610호실 乃至, 616호, 621호, 623호, 625호, 627호, 629호, 631호실과 增築部인 656호실벽 分電盤으로 電源이 供給되고 교환실벽 分電盤에는 左 10개, 右 12개 回路에 各 60A 筒型퓨즈가 삽입되어 있고 右 12개 回路中 右 相으로부터 2번째 回路는 分電盤에서 交換室 앞 복도까지는 5.5m/m²線으로, 同복도를 따라 다른 地點까지는 2m/m² 銅線으로 配線 配管되었으며 위 分電盤 左 10개 回路中 첫번째 回路는 分電盤에서 621호실, 623호실, 625호실까지는 5.5m/m²線으로, 621호실에서 627호실, 629호실, 631호실까지는 2m/m² 銅線으로 各 建物の 시멘트骨造內에 配線되어 各室內에서 0.75m/m²연선으로 各 형광등에 連結된 事實, 위 各 回路의 2m/m² 銅線과 0.75m/m²연선사이와 0.75m/m²연선과 形광등 비닐電線사이 連結部分에는 납땜을 하거나 접속된 其他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비틀어서 連結한 事實을 認定할 수 있다. 이는 電氣設備技術基準令 第 13條(電線의 접속法) 및 同第 39條에 위배된 事實을 除外하고는 電氣工事는 良好한 狀態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과연 檢察에서 主張하는 대로 6層 中央非常階段앞 복도 中央形광등 設置地點에서 電氣的原因으로 發火되었는지를 살펴 보면 ① 治安局 수사지도課 火災감식반의 감정서 및 檢察, 法院에서의 陳述, ② 鑑定人 P의 鑑

定書 및 그의 證言을 綜合하면 첫째, 電線接觸部分의 접속不良. 둘째, 形광등自體의 内部 부속장치 不良(例 초크). 셋째, 비닐電線의 自然的 絶緣劣化의 어느 한가지 原因에 依하여 熱이 發生하고 그로인하여 短絡이 되어 發火 되었으리라고 推定하고 있는데 위 甲·乙 回路中 어느 하나 또는 그 모두가 非電氣의 原因에 依한 發火로 화염을 받아 2m/m² 銅線 或은 5.5m/m² 電線部分에서 短絡되어도 위 分電盤 右相 2번째 퓨즈와 左相 1번째 퓨즈가 용단된다는 事實에는 變함이 없으며 2개 퓨즈 中 어느 것이 먼저 용단되었는지 또한 甲·乙 回路 各各 어느 地點에서 短絡되었는지 밝혀 지지 않는 이상 甲·乙 어느 回路에서 먼저 發火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위 3가지 原因中 어느 原因에 依하여 發火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萬若 위 둘째 또는 셋째의 原因 이라면 과전류차단기의 퓨즈가 과다하다거나 電線접촉이 不良하다거나를 論하기에 앞서 形광등이나 電線의 製造業者나 建物에 대한 電氣工事業者의 責任이 一次的으로 問題되어 야 할 것이다.

한편 發火點이라고 主張하는 地點은 20W 짜리 形광등이 2개 달려 있을 뿐이므로 거기에 흐르는 電流는 0.4A임이 數值上 明白한 바 0.4 A電流上에 접속이 不良하다 하여 發火의 原因이 될 수 있는가는 극히 의심스럽고 20W 形광등 초크不良으로 發火된다는 것도 그 可能性은 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以上 3가지 原因中 어느 電氣的인 原因에 依하여 발화되었는지 밝혀지지 않고서는 과전류차단기에 과 대한 퓨즈를 사용한 것을 是正하지 못한 J의 責任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632호 실의 침대 머리맡 部分과 침대 베개의 탄모 양을 보면 632호실 목욕탕쪽 침대 머리맡 부분과 베개사이 상당히 강한 불씨가 베개와 침대 나무판을 각각 지름 10cm程度 원형으로 태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불씨 자체가 하나의 發火原因이 될 수 있으리라고 認定되는 點. 證人 P의 證言에 依하면 632호 실에 들어가보니 목욕탕쪽에 있던 침대 매트 리스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목욕탕안에

침대 이불을 싸는 白布가 놓여 있었으며 침대 옆 작은 탁자위 재떨이에서 담배 궤초 2개를 보았다는點. 632호실에 02:10경 두男女가 投宿했던者中 女子가 복도로 탈출시 복도에는 연기가 있었다고 한점, 投宿한 男女의 담배피운 개수를 證人들 또는 本人의 證言에 依하면 담배를 3개 피웠다고 보여지는데 궤초는 2개 밖에 없었다는 點등을 綜合해보면 632호실 침대 머리맡 부분에서 담배불에 의한 發火가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이 完全히 排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6층 中央非常階段앞 복도가 發火部分인지, 이事件火災의 原因이 電氣의인 것인지, 非電氣의인 것인지, 電氣的인 것이라면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電氣的인 原因에 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J에 대한 이事件 公訴事實은 電氣의 原因에 依한 發火라는 前提下에 위 甲·乙回路에 연결된 퓨즈가 용단된 事實에서 逆推理하여 電氣의 火災의 하나의 可能性을 提示한데 不過하고 이를 認定할만한 아무런 證據가 없다. 그러므로 J에게 刑事訴訟法第 325條後段에 依하여 無罪를 宣告한다.

라. 城北支院判決主文要約

- (1) 나이트클럽代表 P.: 懲役 1年
- (2) 나이트클럽專務 S.: 禁錮 10月, 2年 執行猶豫, 食品衛生法違反部分 無罪.
- (3) 나이트클럽支配人 S.: 禁錮 1年, 食品衛生法違反部分 無罪
- (4) 大旺코너 變電室 電工 R.: 禁錮 1年, 2年執行猶豫
- (5) 大旺코너代表 K.: 罰金 200,000원, 業務上失火 및 消防法違反部分 無罪.
- (6) 브라운觀光호텔代表 K.: 罰金 100,000원 業務上過失致死傷部分 無罪.
- (7) 타임나이트클럽 代表 P.: 懲役 1年
- (8) 大旺코너 管理課長代理 C.: 罰金 20,000원
- (9) 大旺코너 管理部長 R.: 無罪.
- (10) 大旺코너 變電室長兼 電氣保安擔當者 J.: 業務上失火 無罪.

2. 獨立記念館火災事件

가. 事件概要

1986年 8月 15日을 竣工目標로 最終 마무리 工事を 하고 있던 獨立記念館 建立 工事場에서 同年 8月 4日에 發生한 火災事件인 바 主施工業體인 大林産業株式會社와 大林産業(株)로부터 電氣工事部分을 下都給받은 現代電業株式會社, 現代電業株式會社에 電氣工事資材納品業體인 明電商社等 關聯者들이 1986年 12月 15日 大田地方法院 天安支院에서 最高 懲役 1年 6月부터 禁錮 1年, 追徵金科徵等 實刑을 宣告받은 事件임.

나. 被告人 人的事項 및 犯罪事實

(1) 現代電業(株) 代表 R.

大林産業株式會社가 獨立記念館建立推進委員會로부터 都給받은 獨立記念館新築工事中 電氣工事部分을 大林産業(株)로부터 下都給받은 者로서 大林産業(株)의 電氣工事 監督官이 監督義務內容에 따라 原則적으로 工事監督을 할 境遇 作業工程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까다롭게 監督하지 않도록 數次에 걸쳐 金品을 提供하였고 또 消防施設等の 免許없이 記念館建立現場에 自動火災탐지기設備 屋內消火栓設備, 하론消火設備, 放送設備等の 電線管配管 및 入線工事等を 하였음.

(2) 大林産業(株) 電氣係長 K.

獨立記念館 電氣工事中 本館 電氣工事 分 電盤結線 및 配管作業을 監督하는 者로서 1986年 7月末경 本館分電盤 結線마무리 作業에 대하여 現代電業側으로부터 作業을 完了하였다는 報告를 받았으면 이러한 경우 設計圖에 따라 分電盤 結線作業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確認하여야 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이를 대만히 한채 確認하지 않았음.

(3) 明電商社專務 G.

獨立記念館 電氣工事に 必要한 資材를 納

品하던 者로서 規格未達의 製品을 納品하더라도 이를 까다롭게 確認하여 返納措置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뜻으로 製品引受監督官에게 金品을 提供하였고 工業振興廳으로부터 形式承認을 받지 아니한 間接照明燈 110 V 10W짜리 電球 3,800개를 納品하였음.

(4) 現代電業 電工 R.

獨立記念館 電氣工事中 分電盤 結線擔當組長으로 助工인 現代電業社 電工 R을 데리고 일해오던 者로서 역시 助工인 N로부터 1986年 7月중순경 本館 分電盤 結線作業을 提示받아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上記 R은 電工의 作業을 補助하는 助工에 不過하고 同分電盤은 한개의 分電盤위에 3종류의 電壓用 스위치가 設置되어 그 구조가 복잡하므로 同人으로 하여금 單獨으로 結線作業을 하게해서는 아니되는데도 不拘하고 1986年 7月 24日 07:30頃 單獨으로 結線作業을 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후 同人이 作業한 內容이 設計圖대로 적정하게 結線되었는지 여부를 確認해야 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태만히 하여 이를 確認

하지 않았음.

(5) 現代電業社 電工 N.

獨立記念館 建立現場中 本館作業班長으로 本館電氣工事に 關하여 所屬電工들의 業務를 指揮監督하는 業務에 종사하던 者이므로 助工 R은 原來 電氣工事 經驗이 없는 者로서 電工의 補助役割만을 하여야 할 뿐 단독으로는 分電盤 結線作業같은 복잡한 作業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不拘하고 1986年 7月 24日頃 電工 R에게 指示된 本館分電반에 追加入線된 電線의 結線作業을 助工인 R에게 指示하여 單獨으로 結線作業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放置하였고 또한 作業班長으로서는 作業指示를 한 후 作業이 完了되면 그 作業의 適正여부를 設計圖와 對照하여 確認해야 할 뿐 아니라 特히 위 分電盤 作業은 作業內容이 복잡하고 降壓器 미착으로 380V線과 110V線이 連結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助工 R이 單獨으로 作業한 것이므로 적정여부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채 作業內容을 確認하지 않았

「三·一文化賞」授賞 案内

◎ 賞의 種類 및 賞金

賞의 種類...學術賞, 藝術賞, 技術賞, 社會奉仕賞 各一人

賞 金...學術賞, 藝術賞, 技術賞, 社會奉仕賞 各 壹千萬원

◎ 受賞資格

受賞者의 資格

受賞者는 우리나라의 國籍을 가진者 또는 特殊한 境遇에는 이들의 共同体로서 다음 各項에 該當하여 그 業績 및 功績이 專門的 審査에 依하여 該當部門에서 卓越하며, 또한 民族文化發展에 크게 寄與하였다고 認定되어야 한다.

但, 그 業績이 完成된 後 三個月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에 限한다.

3. 技 術 賞 (1. 學術賞, 2. 예술상, 4. 社會奉仕賞 내용생략)

新案發明 또는 優秀한 技術로써 産業分野에서 劃期的인 業績을 이룩한 者

提出期間: 1991年 10月 10日까지

連絡 및 書類提出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元曉路 4街169-3

財團法人 三·一文化財團事務局 (電話 712-6573)

※ 三·一文化賞 施賞式: 1992年 3月 1日

음.

(6) 現代電業 電工 K. 및 同 P.

獨立記念館 電氣工事中 本館의 配管 및 入線作業을 하던 者들로서 1986年 8月 4日 21:30頃 獨立記念館 本館 1層 西쪽 配電室앞에서 경비원 K로부터 불을 켜달라는 要請을 받고 스위치를 作動케 되었는데 1986年 7月 10日 晚上 級者인 N로부터 本館 불을 켤 경우 分電盤上 水銀燈 메인스위치만을 作動하라는 指示를 받았고 當時는 本館 電氣施設에 대하여 電氣安全公社로부터 安全點檢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本人은 配管入線作業擔當者이어서 分電盤 作業狀況을 알지 못하므로 N로부터 作動指示받은 스위치 以外의 스위치를 作動할 경우 合線等 電氣事故가 發生할 염려가 있으므로 作動指示를 받은 스위치 만을 作動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대만히 한채 먼저 水銀燈 메인스위치를 누르고 水銀燈 불이 점등되기도 전에 그 오른쪽에 位置한 間接照明燈스위치를 보고 갑자기 켜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間接照明燈스위치中 左側 上段 1번스위치를 함부로 作動하고 電工 P는 電工 K가 위와 같이 間接照明燈 1번回路 스위치를 作動하자 마자 광하는 큰소리와 함께 섬광이 비쳤으므로 이러한 경우 電工으로서는 스위치 조작으로 인하여 電氣合線等 電氣施設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더이상 스위치를 動作하지 말아야 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再次 같은 스위치를 作動한 過失과 이와 같은 事故인들의 過失이 經합되어서 이로 인하여 本館 後面쪽 間接照明燈 부설대가 設置된 西쪽에서 첫번째 서까래를 둘러싸고 있는 강화 플라스틱(F.R.P.) 옆면 中間部分에 設置된 1번回路上的 間接照明燈 140개의 電球에 380V의 電壓이 2회에 걸쳐 인가(印加) 됨으로써 위 各 電球金具와 소켓 金具사이에서 過電壓에 依한 閃絡現象(閃絡現像)으로 인하여 그 接觸부위에 閃絡 및 高熱이 發生해서 間接照明燈 부설대가 設置된 용마루쪽 강화 플라스틱部分과 그 周邊에 덮힌 분진에 着火되고 그곳에서 불이 번지면서 강

화플라스틱 옆에 설치된 나일론 漁網 및 天井의 木板으로 擴散되어 本館建物 天井 3,000坪, 時價 19억원 相當을 소훼하였음.

(7) 大林産業(株) 電氣部次長 K.

이는 大林産業(株)所屬 獨立記念館 電氣工事 監督者로서 1986年 7月 6日頃 當時 本館 電氣施設은 電氣安全公社로부터 安全點檢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使用케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不拘하고 이를 無視한채 1986年 8月 4日까지 現代電業社 現場所長 K와 함께 本館 電氣施設을 使用케 하고, 1986年 7月末頃 現代電業社側으로부터 本館 電氣作業이 完了되었다는 報告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工事 監督者로서 本館 電氣工事中 分電盤作業등 重要한 部分에 대하여 設計圖대로 作業이 되었는지 여부를 確認하여야 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이를 대만히 한채 確認하지 않았음.

(8) 現代電業 電氣工事 技師(現場所長) K.

獨立記念館 電氣工事 現場所長이며 電氣事業法上 責任電氣技術者로서 電氣工事に 따른 위험 및 장애를 防止하여야 할 業務上義務가 있으므로 1986年 7月 6日頃 當時 本館 電氣施設은 電氣安全公社로부터 安全點檢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사용케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不拘하고 이를 無視한채 그때부터 1986年 8月 4日까지 本館 電氣施設을 使用케 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不可避한 事故으로 安全點檢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케 한다 하더라도 本館 1層 西쪽 配電室 分電盤은 그 구조상 380V, 220V, 110V 3종류의 電壓用 스위치가 한개의 分電盤上에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設計되어 있고 特히 110V用 間接照明燈스위치는 380V 回路에서 降壓器等을 거쳐서 電氣가 連結되게 設計되었는데 當時 降壓器注文遲延으로 降壓器가 設置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分電盤上 回路別 電壓表示나 降壓器設置 및 同設置場所에 대하여 전혀 表示가 되어 있지 않아 위 回路를 降壓器를 거치지 아니한채 直接 連結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分電盤上 電壓表示를 하고 降壓器가 設置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설치장소를 表示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986年 7月末 本館 電氣工事 擔當班長인 N로부터 本館 電氣作業이 完了되었다는 報告를 받았으면 이러한 경우 現場所長 으로서는 本館電氣工事中 分電盤 結線作業等 電氣部分에 대하여 設計圖대로 作業이 되었는지 여부를 確認하여 위 380V 回路가 降壓器를 通하지 아니하고 直接 110V 間接照明燈 回路로 連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아무런 表示를 하지 아니하였음.

(9) 現代電業社 電工 R.

앞서본 바와 같이 獨立記念館 本館 1層西쪽 配電室에서 分電盤 結線作業을 하게 되었으며 作業時 回路圖를 보거나 分電盤 作業組長인 R에게 문의를 하는 등 設計圖上 電線의 連結事項을 明確히 숙지한 後 結線作業을 하여야 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電線連結事項을 確認치 아니한 채 作業을 한 業務上 過失로 380V의 間接照明燈 메인스위치回路와 110V의 間接照明燈 分岐別 스위치 回路는 中間에 降壓器를 거쳐서 連結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곳에 있던 8스퀘어짜리 電線을 절단하여 直接 連結하였음.

다. 大田地方法院 天安支院 判決主文 要約

가) 現代電業(株) 代表理事 R. : 懲役 1年, 2年 執行猶豫

나) 大林産業(株) 電氣係長 K. : 懲役 1年, 1,240萬圓 追徵.

다) (株)明電商社 專務 G. : 懲役 1年, 2年 執行猶豫.

라) 現代電業(株) R. : 禁錮 1年.

마) 現代電業(株) N. : 禁錮 1年.

바) 現代電業(株) 電工 K.

現代電業(株) 電工 P. : 禁錮 1年, 2年 執行猶豫

사) 大林産業(株) 電氣部次長 K. : 懲役 1年

6月, 1,240萬圓 追徵

아) 現代電業(株) 現場所長 K. : 禁錮 1年 6月.

자) 現代電業(株) 電工 R. : 禁錮長期 1年 6月, 短期 1年.

3. 진달래 아파트 感電負傷損害 賠償請求事件

가. 事件概要

1987年 12月 1日 서울特別市 江南區 도곡동 所在 진달래아파트 構內變電室(3次無人變電所)內에서 發生한 事件인 바 原告 K(아파트 管理事務所 女職員)가 1987年 12月 1日 18:00경 業務를 마치고 管理事務所 기관실 男子職員 K등 6名과 함께 機關실內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19:00경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다가 19:30경 다시 아파트단지內 16동 地下室 3次熱管理室에서 근무중이던 K를 찾아와 함께 있던中 入住者인 婦人 2名이 난방이 잘 안된다고 熱管理室에 찾아와 出入門을 두드리자 原告가 入住者들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熱管理室옆의 第3變電室로 通하는 出入門을 열고 들어가 變電室의 中間에 設置된 방책철사망의 出入門이 시정되지 않은채로 있어 그門을 열고 들어간 다음 전동 수전반이 가설된 캐비닛 모양의 Cubicle뒤에 몸을 낮추어 숨으려다가 6.6kV고압線에 접촉 감전되어 右側頭部전이부, 안면부, 右側下肢等에 3度以上の 火傷을 입음으로서 損害賠償(치료비 및 위자료)을 請求한 事件임.

나. 事件當事者

가) 原告

① Y: 負傷者 K의 母親

② K: 感電負傷者 本人이며 아파트 管理事務所 事務員

③ K-1 } K의 동생

④ K-2 }

나) 被告

① K: 아파트 入住者代表會議會長

② M : 아파트 管理事務所長(電氣保安擔當者)

다. 判 決

1988年 7月 15日 서울地方法院 東部支院에서 原告敗가 宣告되므로 原告는 서울高等法院에 抗訴하였고 抗訴審은 1989年 1月 17日 原告에 一部分 勝訴를 宣告하였음.

라. 서울高等法院 判決要旨

入住者 代表會議 管理規則에 依하면 自治管理機構는 高壓가스暖房, 發電 및 變電施設等에 대한 安全管理責任者를 任命하여 安全管理診斷을 實施케하고 그 結果를 文書로 保管하여야 하며 위험이 豫想될 경우에는 當該施設의 利用을 制限 또는 補修하는 등 必要한 措置를 즉시 취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며 電氣設備基準에 關한 規則 第58條 第2項 第2號에 依하면 變電室의 出入口에는 取扱者以外의 者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정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當아파트 管理事務所의 電氣主任으로 電氣工作物의 安全管理責任者인 J(訴外)가 事件事故가 發生한 3次變電室의 出入口의 시정장치가 破損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放置한채 地下室의 出入口에 統制區域이라는 팻말을 설치하고 變壓器 등을 차단하기 위한 철망에 위험표지판만을 부착하였던 事實, 原告 Y는 原告 K의 어머니이고 原告 K-1, K-2는 K의 동생임을 각각 認定할 수 있어 이러한 認定事實에 依하면 이事件은 아파트 단지内の 施設物 등의 占有 管理者인 代表者會議가 變電室 出入口의 시정장치를 파손된 채로 방치한 保存上의 하자와 被告의 僱用자인 J(電氣主任)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發生하였다고 할 것인 즉 被告는 위와 같은 工作物의 占有者 및 J의 使用者로서 이 事件으로 因하여 原告들이 입게 된 諸般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할 것이다.

原告들은 被告 M(管理事務所長)이 所長으로서 管理室의 조원인 抗訴 K와 電氣主任인 訴外 J등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事件이 發生하였으니 代表者會議의 代理監督者로서 위 訴外人들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原告들이 입은 損害를 배상할 責任이 있다고 主張하나 管理事務所의 所長은 직원들을 指揮監督하고 아파트內의 管理業務를 총괄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이事件에 關하여 위 訴外人들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具體적으로 어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點에 대한 原告들의 아무런 主張, 立證이 없으므로 피고 M에 대한 原告들의 主張은 理由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아파트단지内の 熱管理室 및 變電室은 關係직원外에는 出入이 統制되고 있는 구역이고 특히 高壓電流가 흐르는 전동수전반이 설치된 곳은 感電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特別히 철망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管理事務所 職員으로 근무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原告가 근무시간이 지난 以後인 事件當日 19:30경 직무와 關係없이 3次熱管理室로 訴外 K를 찾아갔다가 入住者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急히 變電室과 차단철망의 門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전동수전반 뒤로 몸을 숨기려다가 感電事故를 당한 事實을 認定할 수 있고 이와 같은 原告의 過失이 이事件事故의 原因이 되었다고 할것인 바 이는 피고 代表者會議의 損害賠償責任을 免케할 程度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被告의 損害賠償額을 定함에 있어서 原告의 過失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7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損害賠償請求額과 抗訴審 判決結果 對比

原告請求額	判決額
Y 1,000,000	300,000
K 18,469,382	5,270,547
K1 500,000	100,000
K2 500,000	100,000
○ 1987. 12. 1부터 完濟 日까지 年2割 5分 利子	1987. 12. 1 부터 判決 宣告日인 1989. 1. 17 까지 年5分